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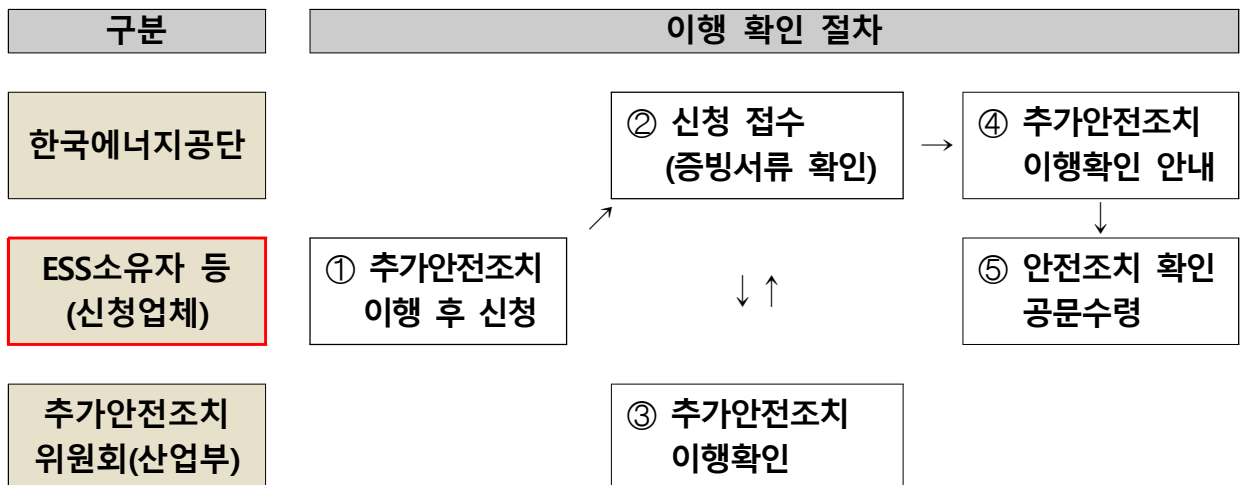
에너지저장장치(ESS) 추가안전조치 이행 확인 공고

에너지저장장치(ESS) 추가안전조치 이행 사항 및 절차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1년 3월 5일
산업통상자원부장관

1. ESS 추가안전조치 개요

- (확인대상) 가동중단 중인 옥내 ESS 설비의 방화구획, 내화구조물, 방화벽 및 자동소화설비 설치 등 추가안전조치 여부
 - * 옥내설비의 옥외이설은 대상에서 제외
- (조치내용) ESS 배터리가 포함된 실의 방화구획 및 소화설비 구축 등
 - * 붙임 참조
- (신청기간) 공고일로부터 ~ 2021년 12월 31일
 - * 추가안전조치 위원회는 5~6회 개최 예정(4, 6, 8, 10, 12월, 차년도(필요시) 등)이며, 개최시기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 - ** '21.1월 ~ 공고일 이전 등기 접수된 건은 4월 위원회 상정 예정
- (신청절차) 신청사업장은 안전조치를 이행하고, 공단에 이행결과서를 제출하면 안전조치위원회 확인 후 공문 발송



* 공통안전조치 및 추가안전조치 모두 이행후 재가동 권고

2. 신청서류

- ①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결과서(양식 참조)
- ② ESS 배터리 실 건축 도면(체적 및 배터리, 소화설비 확인용)
- ③ 공사내역서 또는 설명서(추가안전조치 내역을 반드시 포함)
- ④ ESS 사용전검사확인증(전기안전공사 검사필증)
- ⑤ 내화구조물(벽4면 및 천장 등)에 대한 내화구조인정서, 방화문 및 소화설비 시험성적서 등

3. 신청접수

- 접수방법 : 신청서류 ①~⑤ 순서대로 구분하여 파일(또는 폴더) 제출
 - 파일(또는 폴더)명은 신청서류 ①~⑤ 참조하여 작성
 - * ex) 1. ESS 추가안전조치 이행결과서, 4. ESS 사용전검사확인증 등
- 접수처 : 전자우편(ess@energy.or.kr)으로 제출
 - * 전자문서 유통이 가능한 공공기관 등은 행정망 전자문서로 제출 가능
 - 전자우편 발송 후 담당자(☎052-920-0564) 유선 통보 및 접수 확인 필수
 - * 서버 문제 등으로 인한 발송 오류는 미접수로 간주함

4. 기타사항

- 본 공고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ESS 추가안전조치 위원회의 결정사항에 따름
-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청업체에 이행확인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
- 안전조치 이행과 관련된 증빙서류 미비시 확인이 불가할 수 있음
- 문의처 : 한국에너지공단 ESS 추가안전조치 담당자(☎ 052-920-0564)



1. 추가 안전조치 이행결과

ESS사업장명	◦	ESS 배터리 社/용량	◦	/	KWh
ESS사업장 주소	◦				
소유·관리자	◦ 성명 :	ESS 활용 용도	◦		
안전조치 담당자	◦ 성명 :	◦ 연락처(휴대폰) : - -			

구 분		조 치 항 목	조치내용(이행여부 등)
①	방화구획 (벽4면 및 천장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화재시 화염이 일정구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ESS실을 내화구조로 된 바닥, 벽, 천장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 	◦ 조치내용 상세히 기술
②	화재 확산 방지조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ESS실에서 외부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준하는 내화구조물(방화벽 등)로 보강 및 갑종방화문 설치 	◦ 조치내용 상세히 기술
	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KS F 2268-1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 갑종방화문 설치 	◦ 조치내용 상세히 기술
③	소화설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동식 소화설비 설치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: 권고량 약 220g/m³ 분말자동소화장치 : 권고량 약 160g/m³ 배터리 내부 발화 진압(소화)이 가능한 자동식 소화설비(시험성적서* 必) * [참고] 추가안전조치 가이드라인 참조 	◦ 조치내용 상세히 기술

년 월 일

총괄이행책임자 : (인)
소유주(관리자) : (인)

2. 안전조치 항목별 증빙사진(컬러)

①-1.

조치 전	조치 후
조치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사진 첨부	① 방화구획(벽4면 및 천장) 조치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첨부(①-1,2,3...)

②-1.

조치 전	조치 후
조치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사진 첨부	② 화재확산 방지 조치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첨부(②-1,2,3...)

③-1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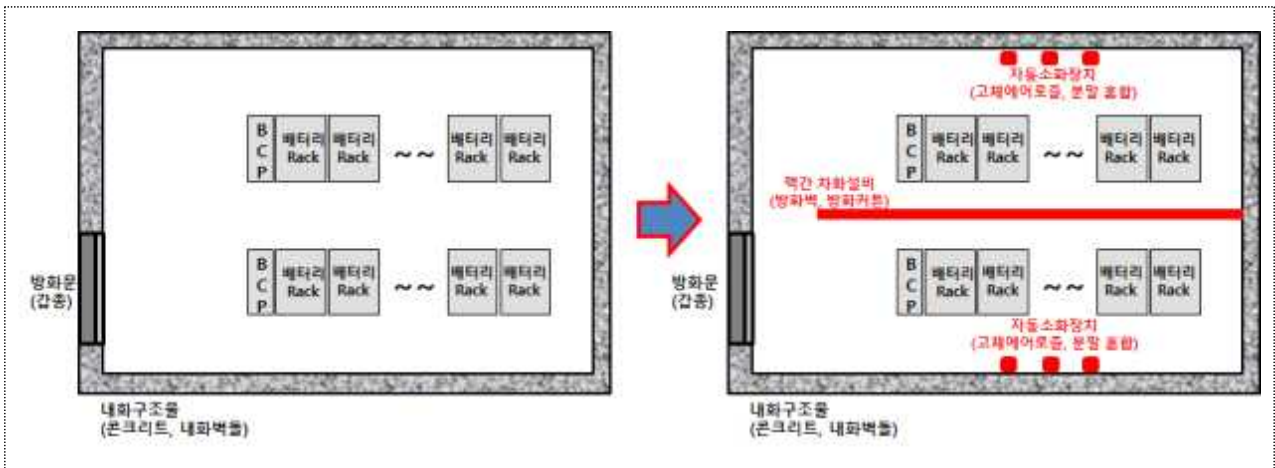
조치 전	조치 후
조치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상세사진 첨부	③ 소화설비 조치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첨부(③-1,2,3...)

※ 증빙사진은 6장/1페이지로 3페이지 이상 첨부할 것(형식 자유)

① 방화구획* 內 ESS 설치 개소

- (필수) 자동소화장치("참고"의 추가안전조치 가이드라인 ④항목 참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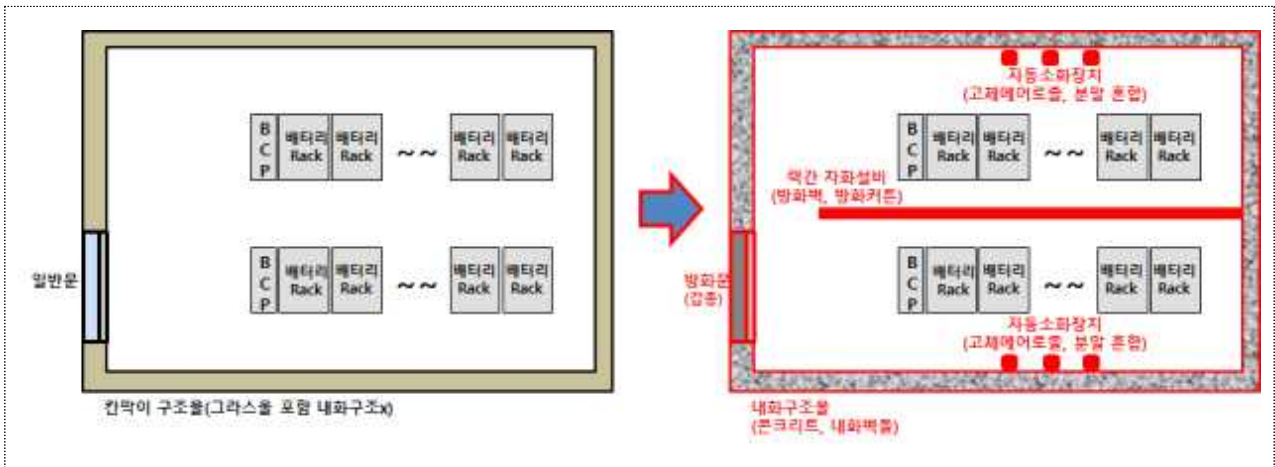
* 화염이 ESS실 외부로 확산되지 않도록 ESS실 4면이 내화구조로 구성되며 갑종방화문 설치



※ 렉간 차화설비(방화벽·불연발포성 방화커튼)는 권고사항으로 필수 아님

② 방화구획이 아닌 칸막이구조 內 ESS 설치 개소

- (필수) ESS실 외부를 방화구획에 준하는 내화구조물로 변경, 방화문(갑종) 설치, 자동소화장치("참고"의 추가안전조치 가이드라인 ④항목 참조)



※ 렉간 차화설비(방화벽·불연발포성 방화커튼)는 권고사항으로 필수 아님

③ 안전조치 이행 절차

- ☞ 공통·추가안전조치 이행 → '안전조치 결과서' 제출(에공단) → 이행여부 점검 확인(안전공사·에공단) → ESS 안전위원회 조치확인 → 결과 통보(에공단)

① 방화구획

- 화재시 화염이 일정구역 밖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ESS실을 내화 구조로 된 바닥, 벽, 천장 및 갑종방화문으로 구획

② 내화구조물

- ESS실에서 외부로 화재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방화구획에 준하는 내화구조물(방화벽 등)로 보강 및 갑종방화문 설치

③ 방화문

- (갑종방화문) KS F 2268-1 내화시험결과 비차열 1시간 이상

④ 자동소화설비

- 고체에어로졸 자동소화장치 권고량 약 $220\text{g}/\text{m}^3$ 및 분말자동소화장치 권고량 약 $160\text{g}/\text{m}^3$
- 방재시험연구원, 소방산업기술원 등 국가공인시험기관에서 ESS 모듈(또는 랙) 단위에서 시험성적서*를 득한 소화설비(자동소화장치)

* 배터리 내부 발화 등의 조건에서 화재 진압(소화) 가능 여부를 시험하여야 하며, 추가안전조치 위원회에서 시험 조건 및 방법 검토 후 이행 확인 여부를 통보